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업경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환경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자

2.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④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단지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지원계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